

#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광역시 선수단복 구매계약 특수조건

본 입찰의 단복구매 계약 특수조건은 “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광역시 선수단복 구매” 입찰에 따른 계약에 적용된다. 낙찰자(이하 “계약자”라 한다)는 단복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준하여 선수단복을 납품하고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.

## 1. 유의사항

- 가. 단복의 품목, 세부사이즈, 구매수량, 납품방법 등 세부사항은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광역시 선수단복 과업지시서(이하 “과업지시서”이라 한다)를 따른다.
  - 나. 본 입찰서 제출 건에 참여하기 전에 “과업지시서”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부산광역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 계약 및 단복구매 담당자와 협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.(계약 및 입찰 ☎051-500-7915, 단복 ☎051-500-1332) 만일 임의로 단복을 납품하여 “체육회”에서 원하지 않는 단복이 납품 될 경우 “체육회”에서 요구한 제품으로 즉시 100%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. 이때 교환에 따른 발생비용은 “계약자”가 전액 부담한다.
  - 다. “계약자”는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점은 계약 전에 “체육회”와 협의하여야 한다.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“체육회”가 요구한 모든 사양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에는 “체육회”的 해석에 따라야 한다.
  - 라. “계약자”는 공급하는 단복 일체에 대해 상표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제3자로부터 청구 받음이 없이 “체육회”가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, 만약 이로 인하여 “체육회”가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“계약자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※ 수입 의류의 경우 정식수입 경로를 통해 수입된 의류여야 한다.

- 마. “계약자”는 본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모든 내용물을 원상태로 납품 하여야 하며 과실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하여 운반 중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.
- 바. 포장 납품된 단복은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품명 및 사이즈 등 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지워지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.
- 사. “계약자”는 본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모든 제품의 규격이 “체육회”가 원하는 규격이 아닐 경우 교환 요청에 따라 즉시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.
- 아. 납품기한은 2026년 4월 10일까지이며, 납품장소는 “체육회”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.

## 2. 검사 및 검수

- 가. 단복규격의 확인은 “과업지시서”에 따르며,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“계약자”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.
- 나. 검수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“계약자”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.
- 다. 최종 검수 결과 취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단복의 하자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, “체육회”의 요구에 의해 “계약자”는 납품한 단복을 회수하여야 하며, 그 비용은 “계약자”가 부담한다.
- 라. 단복 납품 시에는 “체육회” 각 담당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.
- 마. 단복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“체육회”에서 지정해 준 시간과 장소에 납품한다.
- 바. 단복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납품 완료시점으로 본다.

## 3. 하자보증 및 무상지원

- 가. 납품 단복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한다.
- 나.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, 불가항력 및 “체육회”에서 인정하는 원인을 제외하고 “계약자”가 무상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.
- 다.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“계약자”는 신속하게 교체하여 훈련 및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,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“계약자”的 부담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.

라. 납품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검수 후에도 불량품의 발생 시에는 시일의 경과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
#### 4. 계약의 해지

- 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(계약의 해제 · 해지 등)에 따라 “체육회”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- 나.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주최 및 주관단체, 정부, 지자체 결정에 따라 대회가 연기 및 취소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#### 5. 기타사항

- 가. 본 특수조건은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“계약자”는 납품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.
- 나.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“체육회”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2026. 02. 05.

부산광역시체육회